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7,502,876,375	225,086,291
일	반 회 계	6,059,611,981	181,788,359
특	별 회 계	1,443,264,394	43,297,932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30,419,307	9,912,579
①	상 수 도 사 업	152,116,035	4,563,481
②	하 수 도 사 업	178,303,272	5,349,098
	기 타 특 별 회 계	1,112,845,087	33,385,353
①	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384,794,101	11,543,823
②	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5,063,557	151,907
③	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	6,704,823	201,145
④	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50,511,747	1,515,352
⑤	택 지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1,173,397	35,202
⑥	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40,002,140	1,200,064
⑦	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	9,976,630	299,299
⑧	학 교 용 지 부 담 특 별 회 계	36,897,382	1,106,921
⑨	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	9,759,612	292,788
⑩	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특 별 회 계	57,616,616	1,728,498
⑪	도 시 철 도 사 업 특 별 회 계	323,752,642	9,712,579
⑫	소 방 사 업 특 별 회 계	186,592,440	5,597,773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 와 같다.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489,678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 상환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